



의안번호	제 28 호
의결 연월일	2021. 4. 1. (제 4 회)

심의 의결 사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미래경제국장
제출연월일	2021. 4. 1.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28
----------	---------

제출연월일: 2021년 4월 1일

제출자: 미래경제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정비
-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변경
(안 제2조의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2021. 02. 24. ~ 03. 16.): 의견 없음
- 2)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금은 다음 각호”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조의2 본문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졸업후”를 “졸업 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2인이내”를 “2명 이내”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졸업 후”를 “졸업 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제3호 본문 중 “2년이내”를 “2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u>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u>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u>----- ----- <u>필요</u>----- -----.</p>
<p>제2조(기금구성) ①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u>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u> 조성한다.</p>	<p>제2조(기금구성) ① ----- ----- ----- --- <u>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은 <u>다음 각 호</u>----- -----.</p>
<p>1. 2. (생략) ② (생략)</p>	<p>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1년 6월 30일</u>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6년 6월 30일</u>----- -----.</p>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없다.

1. 2. (생 략)
3. 졸업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5. (생 략)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 4. (생 략)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생 략)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생 략)

② 대여금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원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원천 공제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제6조(대여제한대상) --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3. 졸업 후 -----

4. 5. (현행과 같음)

제7조(대여횟수 제한)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1명-----
----- 2명 이내-----
-----.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

③ ----- 졸업 후 -----

---. --- 3년 이내-----

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 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

-----.

1. 2. (현행과 같음)

3. ----- 2년이내-----.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 미래경제국 자원순환과 과장 이기욱

(담당 : 행정7급 김옥경 / ☎ 2600-4065)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정비
-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변경
(안 제2조의2)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 가 번 호	2021 - 11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이경민
입안주무부서	자원순환과	통보(조치)일		2021. 3. 17.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서울강서017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자원순환과	
	담당자명	김옥경	전화번호 02-2600-406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3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강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p>「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03월 2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p> <p>자원순환과장 귀하</p>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